## 57. 메리아스 제조업 근무자에게 발생한 천식

**성별** 여 **나이** 52세 **직종** 완성과 **업무관련성** 낮음

- 1. 개요: 조OO(여, 52세)는 1985년 12월 10일 A어패럴에 입사하여 완성부에서 불량품 검사, 미성업무 등을 하였다. 1995-6년경부터 기침과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약을 복용하다가 2000년 6월 광주 S병원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받았다.
- 2. 작업환경: A어패럴은 남성용 속옷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조립식 건물이었다. 건물 안은 어둡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였다. 남성용 속옷(팬티)를 주제품으로 전량 S업체에 납품하였으며 100% 면제품이었다. 제품 세탁은 물세탁을 하고 신너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. 조OO은 주로 미싱작업에서 나온 완제품(메리야스, 팬티)의 제봉 상태가 잘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완제품을 들어서 제봉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. 작업을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는 않았다. 작업환경측정은 1997년까지는 면분진을 측정하였고, 1998년부터는 기타 분진으로 측정하였으나 노출기준 미만이었다. 당해 근로자는 면분진이외에 다른 유해인자의 노출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.
- 3. 의학적 소견: 조OO은 1985년 입사 후 1994-5년경부터 기침이 심하고 숨이 가쁜 증상이나타나기 시작했다. 증상은 좋아졌다가 나빠지곤 했는데 일을 하면 더 심해졌고 아침과 저녁보다는 밤에 더 심하였으며 퇴직 후에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. 1995-6년경에는 경구용 약제만 복용하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2000년 6월 15일 S병원에 5일간 입원하여 기관지천식을 진단받았다.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않았다. 특진 결과 메타콜린기관지유발검사가 양성(PC20 0.546 mg/mL도)으로 천식이 있음이 확인되었다.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 (skin prick test)에서 흔한 항원에 대해 양성 소견을 보였다. 작업중 최고호기유속측정 (PEF)은 실시하지 못하였고, 특이항원유발검사에서도 음성 소견을 보였다.
- 4. 결론: 근로자 조OO의 기관지천식은
  - ① 임상검사 결과 기관지 천식으로 확진되었으나,
  - ② 작업장에는 천식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확인되지 않고,
  - ③ 흔한 항원에 대한 피부단자검사에서 양성소견을 보이며,
  - ④ 작업장의 옷감 추출물에 의한 특이항원유발검사에서도 음성소견을 보이므로,

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